

**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
재 결**

① 사 건	전남행심 제2023-116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		
청 구 인	② 이 름		
	③ 주 소		
대 리 인	④ 이 름		
	⑤ 주 소		
⑥ 피청구인		⑦ 참 가 인	
⑧ 주 문	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		
⑨ 청구취지	피청구인이 2023. 1. 12.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		
⑩ 이 유	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		
⑪ 근거법조	「행정심판법」 제46조		
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. 2023. 8. 16.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			

이 유

【제2023-116호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】

1. 사건 개요

청구인은 2022. 10. 총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○○○○○○○○○ 등 총 56대의 차량(이하 ‘이 사건 차량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신청(이하 ‘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’이라 한다)하였고, 피청구인은 2022. 10. 14., 2022. 10. 20. 총 3회에 걸쳐 위 신청에 대하여 임시허가(이하 ‘이 사건 임시허가’라 한다)하였다.

이후, 피청구인은 2023. 1. 12. 청구인에게 ‘①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함(이하 ‘이 사건 제1처분사유’라 한다), ② 청구인은 감차 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의 위·수탁계약이 해지된 위·수탁차주에 해당하지 않음(이하 ‘이 사건 제2처분사유’라 하고, 위 제1처분사유와 제2처분사유를 통틀어 ‘이 사건 처분사유’라 한다)’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임시허가를 직권취소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하였다.

청구인은 2023. 3. 14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

2. 청구 취지

피청구인이 2023. 1. 12.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.

3. 당사자 주장 요지

가. 청 구 인

1)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

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보유한 청구의 유한회사 ○○화물운수사(이하 ‘○○화물’이라 한다)와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이후 ○○화물은 불법 증차로 인해 2022. 5. 26. ○○○○시 ○○○○으로부터 감차처분(이하 ‘이 사건 감차처분’이라 한다)을 받았다.

그런데 청구인은 ○○화물이 이 사건 감차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전해 들은바, 위·수탁차주인 청구인으로서 위 소송이 확정(2022. 12. 7.)되어 이 사건 감차처분의 취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.

따라서 위·수탁차주를 보호하려는 임시허가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‘감차 조치가 있는 날’은 단순히 감차처분이 내려진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감차처분이 확정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,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.

2)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

청구인은 위·수탁계약한 차량이 다수인 관계로 관리가 필요하여 일부 차량의 운전기사들에게 위·수탁차주의 지위를 넘겨주었고 이에 따라 위 운전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.

이후, ○○화물의 불법 증차문제가 불거지자 위 운전기사들이 위·수탁계약의 인수를 취소함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원래대로 위·수탁차주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, 청구인이 운송사업자와의 위·수탁계약이 해지된 위·수탁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.

나. 피청구인

1)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

청구인은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 전인 2022. 8. 2. ○○시장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바,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허가 신청기간(3개월)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다.

2)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

청구인은 2022. 2. ~ 3.경 ○○화물과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, ①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점, ② 차량 56대 중 23대에 대해서는 개인인 운전기사들이 ○○화물과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점, ③ 청구인이 ○○화물과 공모 후 임시허가를 받기 위하여 2022. 2. ~ 3.경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, 청구인의 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.

4. 관계 법령

- 1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‘화물자동차법’이라 한다) 제3조, 제40조의3
- 2) 「행정기본법」 제18조

5. 판 단

가. 인정 사실

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, 답변서, 각종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○○○○시 ○○○○은 2022. 5. 26.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차된 ○○화물 소유 차량(66대)에 대하여 감차 조치를 하였다.

2) ○○화물은 2022. 6. 30. ○○○○시 ○○○○을 상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위 소송은 원고 패소로 2022. 12. 7. 확정되었다.

3) 청구인은 2022. 8. 2. ○○시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으나, ○○시장은 2022. 9. 16. 위 신청에 대하여 ‘위·수탁차주 확인 불가’라는 사유로 불허가하였다.

4) 청구인은 2022. 10. 6., 2022. 10. 11., 2022. 10. 18., 2022. 10. 19. 총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을 하

였고, 피청구인은 2022. 10. 14., 2022. 10. 20.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시허가를 하였다.

5) 피청구인은 2023. 1. 12.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- 제목: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행정처분(임시허가 직권취소) 통지 및 대상차량 말소등록 안내
1. (생략)
 2. 귀 사는 우리 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를 ○회에 걸쳐 신청하여 '22. ○○. ○○.(○차)와 '22. ○○. ○○.(○차, ○차)에 임시허가를 득해 영업해 오고 있습니다.
 3. 그러나,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감차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기간이 경과하였고, 감차조치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계약이 해지된 위·수탁차주로 볼 수 없으므로,
 4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건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완료하였고 「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88두8628 판결」 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취소하오니 임시허가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처분 내역 -

당 사 자	소 재 지	처분 사항	처분 사유	비고
㉡○○○○○	○○군 ○○읍 ○○○로 ○○, ○○	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직권취소	법률에 위반된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	

(이하 생략)

6) 청구인은 2023. 3. 14.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,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3. 3. 17.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1) 관계 법령

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】

제3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)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·수탁계약의 위·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(이하 “임시허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제40조의3(위·수탁계약의 해지 등) ③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(위·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)를 받은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의 위·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1. 제19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또는 제5호

2.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(위·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【행정기본법】

제18조(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)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.

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·형량(衡量)하여야 한다.

2) 판 단

가)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

청구인은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기산일인 ‘감차 조치가 있는 날’은 해당 감차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‘소송이 확정된 날’로 해석하여야 하므로,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①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기산일은 ‘감차 조치가 있는 날’로 한다고 법문상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(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2항), ② 관련 법령상 위 기산일에 대한 예외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, ‘감차 조치가 있는 날’의 의미를 법문과 달리 ‘감차 조치에 관한 소송이 확정된 날’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은 이 사건 감차처분이 있는 날(2022. 5. 26.)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. 10. 6. 최초 신청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바,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볼 수 없다.

나)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는 위·수탁계약의 ‘위·수탁차주’였던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(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2항),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·수탁차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.

살피건대,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·수탁계약서에는 위·수탁차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, ○○화

물이 위·수탁차주 변경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2022. 2. ~ 3. ○○○○시 ○○
○○에게 제출한 위·수탁계약서에는 위·수탁차주가 청구인이 아닌 운전기사
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, 동일한 차량에 대한 위 두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
상이한 점, ② 위 ①과 같은 운전기사들(○○○ 등 23명)은 2022. 2. ~ 5. 유
가보조금을 신청·지급받은 반면,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
아예 신청하지 않은 점, ③ 이 사건 임시허가 신청 전에 청구인이 ○○시장
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○○시장은 2022. 9. 16. ‘위·수탁차주
확인 불가’라는 사유로 불허하였는데, 이에 대해 청구인이 소송 등을 통해
다투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, 청구인이 2022. 2. ~ 3.경 ○○화물과 이 사건
차량에 대해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
건 제2처분사유 역시 위법하다 볼 수 없다.

다) 재량권의 일탈·남용 여부

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, 그 처
분이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
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·형량하여야 한다(「행
정기본법」 제18조).

살피건대,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우
려가 있다 하더라도, 그러한 불이익은 위법한 상태가 시정됨으로 인하여 파
생되는 결과에 불과한 점,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화물자동차
운송사업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, 청구인은 이후에도 적법한
위·수탁계약 등을 통해 여전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,
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된 것은 화물자동차 운
송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화물 운송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
하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바, 이 사건 임시허가가 위법한 이상 이를
취소하지 않고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게 한
다면, 이는 위 개정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,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

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
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우월한
점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·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
없다.

라) 소결

따라서 이 사건 임시허가를 직권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
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, 위법·부당하다고
볼 수 없다.

6. 결 론

그렇다면,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
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